

인천지방법원 2020. 2. 12 선고 2019나51942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재판경과

인천지방법원 2020. 2. 12 선고 2019나51942 판결

인천지방법원 2019. 1. 9 선고 2017가단39794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박동혁

피고, 피항소인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권준석

변론 종결2019. 12. 18.

판결 선고2020. 2. 12.

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9. 1. 9. 선고 2017가단39794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7. 2. 2. 접수 제599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(갑 제9 내지 21호증, 을 제9호증(일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증인 G의 증언)을 더하여 보더라도,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.

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신재환

판사이동진

판사박혜정

별지